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325
-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제안일 : 2020년 2월 5일
- 회부일 : 2020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집행기관”을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또는 “공개대상기관” 등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
- 나. 행정정보 공표 대상을 현행화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사항에 담당부서 항목을 삭제함(안 제5조).
- 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안 제11조).

라.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주체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명시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19. 10. 24. ~ 11. 13.)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시 및 산하기관’ 또는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고(안제1조, 안제2~8조, 안제12조~제13조), 행정정보 공표대상 현행화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사항에 담당부서 항목을 삭제하며(안제5조제1항 및 제3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제7조 제2항~제3항, 안 7조의2 및 제7조의3).

가. ‘집행기관’을 ‘산하기관’, ‘공개대상기관’으로 용어 변경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등)

- 안 제1조는 조례 적용대상을 ‘산하 집행기관’에서 ‘산하기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집행기관’ 이라는 용어를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조례안 정비 사항>

조문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조 본문	산하 집행기관	산하기관	알기 쉬운 법령으로의 정비 및 조례목적에 맞도록 용어정리
제2조 1호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제2조 2호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제3조 1항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제4조 제목	집행기관의 책무	공개대상기관의 책무	
제4조 1항 ~3항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제5조 1항, 2호, 7호, 16호	집행기관	→ 공개대상기관	
제7조 2항	집행기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개대상기관	
제7조 6항	집행기관별	공개대상기관별	
제8조 1호, 3호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제12조 1항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서울특별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제12조 3항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제13조 2항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산하 집행기관 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산하기관 ----- ----- ----- ----- -----.

- 안 제1조에서 개정하려는 용어인 ‘산하기관’은 과거에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의 일부가 적용받았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3.12.31.)」이 2007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4. 1.)」의 제정·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산하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통제하에 속해 있는 기관 및 단체로 확장되어 적용과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산하기관이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
- ‘산하기관’이란 용어대신 상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공공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적합한 용어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 법 취지에 맞도록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기관 개념

공공기관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이며, 최협의, 협의, 광의 및 최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가장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정부 소속의 기관과는 별도의 조직과 인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임.

①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수 있는 기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킨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 i) 다른 법률(개별법률, 민법, 상법 등)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ii)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iii)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iv) 정부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v)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vi)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법」 제4조제2항)

- i)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ii)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iii)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안 제2조는 정보공개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고, ‘공개대상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를행정기관을 포함한 서울특별시와 투자기관, 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정의는 현행과 같이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집행기관</u>”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p> <p>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u>집행기관</u>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3.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p> <p>4. “출연기관”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같다.</p> <p>1. “<u>공개대상기관</u>”이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p> <p>2. ----- 공 개대상기관----- -----.</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 과거 내부적으로 ‘서울특별시’를 ‘본청’으로 이해한 관행에 따라 위와 같이 정의하여 정보대상기관 범위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투자기관(공사, 공단), 출연기관”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정보대상기관’ 정의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투자기관”이라는 용어는 본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투자기관’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바, 올바른 명칭 및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함께 2007년에 폐지됨에 따라 ‘투자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용로 구별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와 공단을 말한다.
4. "출연기관"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마찬가지로 동 조례 제2조제4호의 "출연기관"의 정의도 현행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려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 3. 24. 제정. 2014. 9. 25. 시행)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정의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회복지 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논리로 접근해 본다면, 투자기관과 출연기관도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정보공개대상기관'의 범위 설정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 한편, 본 개정안의 정의 규정 개정에 따라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본문 용어 중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공개대상기관’으로 함께 변경하려는 것이나, 본 개정안의 제출(2020. 2. 5.) 이후 김기덕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되었는바, 개정내용 중 ‘집행기관’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조항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의원 대표발의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u>〈신 설〉</u>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④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행정정보 공표 변경 항목 반영

- 안 제5조제1항제15호는 행정정보 공표 항목중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삭제하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

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4.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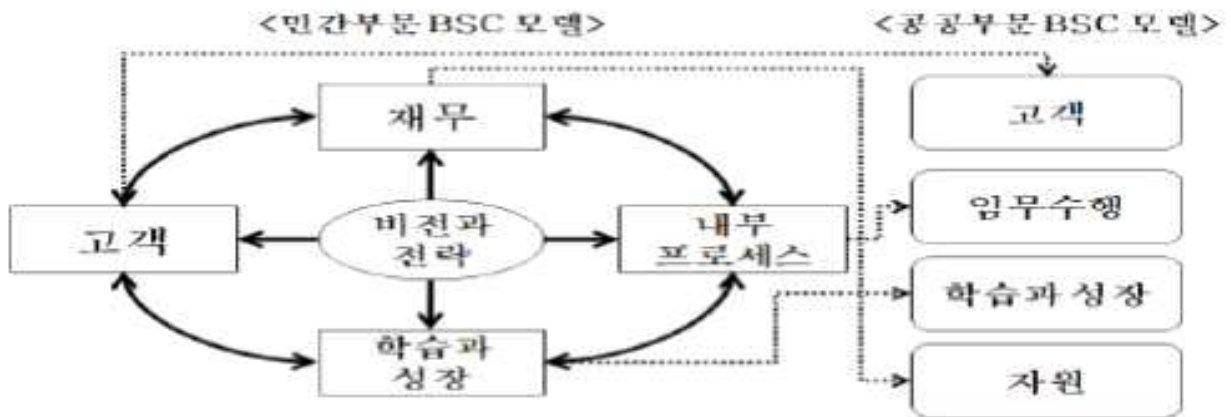
15.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4. (현행과 같음)

15. 서울특별시 균형성과관리 현황

- ※ 공표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의미로써 공공기관은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정보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 ※ **목표관리제(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 조직계층 상·하위 자간에 협의를 통해 부서 및 개인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평가자와 수행자가 목표달성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통해 평가하여 다음 목표설정에 환류하고 그 결과를 보상체계에 반영하는 관리제도를 의미함.
- ※ **균형성과관리(BSC : Balanced Scorecard)** :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목표로 전환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성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목표설정, 지표개발, 성과측정(평가), 결과의 환류 등으로 구성됨.



-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행정 정보 공표항목을 열거주의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 목표관리제 관련 현황은 실시하지 않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으로 변경(2007.8.30)되었는 바, 시문화되고 폐지된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있는 제도에 맞추어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현재 서울시정보소통광장에서 균형성과관리(BSC) 현황을 연1회(4월) 공표하고 있음.

[서울시정보소통광장 균형성과관리 관련 누리집 화면]

번호	제목	공개부서
5	19년 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	평가담당관
4	2019년도 BSC 현황	평가협업담당관
3	2018년도 BSC 현황	평가담당관
2	2017년도 BSC 현황	평가담당관
1	16년도 BSC 관리현황	평가담당관

시정운영관리

공표대상업무를 선택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공표부서
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실적	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실적	수시	수시	홈페이지 링크	기획담당관
시정운영계획	시정운영계획	연 1회	책자발간 후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링크	기획담당관
국경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결과	국경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결과	연 1회	감사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기획담당관
BSC기반 성과관리	▶ BSC 관리현황	연 1회	4월	자료첨부(PDF)	평가담당관

- 다만, 행정정보 공표 항목 중 ‘목표관리제’는 2007년 폐지되어 실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정되지 못한 이유가 단일한 행정편의 주의식 사고 방식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행정국의 해명과 함께 일반 시민이 균형성과관리에 대한 용어의 이해가능성 및 구체적인 영문약어의 포함이나 명칭 조정 방안 또는 균형성과 관리지표를 알기 쉽게 공표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공표정보 관리방법 변경(안 제5조제1항제15호 및 제5조제3항)

- 안 제5조제3항은 현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정보의 내용 중 ‘담당부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 공개내용 및 <u>공개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u>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③ ----- ----- ----- <u>공개주기·시기·방법</u> ----- -----.

- 행정국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동 조례시행규칙에 사전공표 담당부서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직개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서울시가 잦은 조직개편에 따라 실제 공표부서와 규칙에 정해진 부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책임기관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정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기재된 사전공표 담당부서는 총 354개이며, 이중 명칭 변경, 업무 이관 등으로 현재 부서와 맞지 않는 것은 5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서울시 행정조직 개편 시 본 조례 규칙도 연동하여 개편이 가능할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정보공포 책임 담당부서(과)를 규칙에서 삭제하여, 행정 조직 체계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정보공포의 책임부서를 알기가 어려워지는 시민의 알권리 제약 요인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방식은 아닌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은 심의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7조의2(위원의 해촉) 공개대상 기관의 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u> <u>2.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u> <u>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u>
<신 설>	<p><u>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u></p> <p><u>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전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u></p>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 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할 사항 중 동 조례에서 누락되어 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2018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위원회 설치 시 고려사항 중 필수규정 명시 여부(14쪽)

1.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회 존속 기한(5년 이내 범위로 명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①항 및 ②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히, 제7조의2 제2호의 해촉사유(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는 위원의 해촉사유로 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지나, 동 사유로 해촉되는 위원의 경우에는 향후 재위촉도 금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촉위원이나 해촉시 충분한 소명 기회 및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촉하는 등의 안전장치 또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마. 서울특별시 심의회의 위원 및 선임방식 변경(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서울특별시 심의회 위원 구성시 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부위원장 직위를 없애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제11조제1항), 당연직 위원중 언론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제11조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 위 <u>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u> <u>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u>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 위 <u>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u> <u>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u> <u>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u> <u>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② 당연직 위원은 <u>행정국장·언론</u> <u>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u> 으로 한 다.		② ----- <u>행정국장</u> ----- ----- --.		

- 심의회에서 부위원장 직위를 없애고 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당연직 위원중 언론담당관과 시설계획과장을 제외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여부 등에 대한 내부 전문가의 의견이 미반영되어 심의위원회의 기능약화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부위원장 선임 방식 및 당연직 위원 변경은 심의회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당연직 위원들의 참석률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이고 내실화 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 배경을 밝히고 있음.

[최근 3년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20.4.20. 기준)

연도	개최횟수	심의안건	위원 참석률
2020	6회	20건	61.9%
2019	21회	69건	63.3%
2018	21회	76건	63.3%

마. 종합결론

-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개정안과 같이 단편적으로 용어 및 정의를 개정할 경우, 오히려 현행 법령체계와 맞지 않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사전에 엄밀하게 법령 개폐 추이 및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정안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행정정보 공표 항목중 ‘목표관리제’가 ‘균형성과관리 현황’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는 점과 행정정보 공표 내용중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의 불일치와 행정편의를 위해 관련부서를 삭제·변경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조례 개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주요기능 : 우리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자문

- 심의사항
 - 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직권심의 등
-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며, 심의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 결정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1추 95)

구성현황 : 복수 심의회 운영 (당연직 3, 위촉직 10)

- 제1심의회(7) : 행정국장, 시설계획과장 / 교수(2), 변호사(2), 시민단체(1)
 - 제2심의회(7) :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 교수(2), 변호사(2), 시민단체(1)
- ⇒ 법정기한(이의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내 처리를 위하여 2개 심의회 구성
- ※ 부위원장 : 행정국장(제1,제2심의회 겸임),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 외부위원(2년 임기, 1회 연임가능)